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13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3年 2月 4日(木) 午前 11時 35分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1. 火田代土地拂下要求에關한請願審査報告書議決의件
2. 平昌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平昌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平昌郡保健診療所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平昌郡建築條例案
6. '92술및흡과리防除事業眞相把握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7. '92술및흡과리防除事業眞相把握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火田代土地拂下要求에關한請願審査報告書議決의件(朱泰元 議員外 5人 發議) — 2 面
2. 平昌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平昌郡
守提出) ————— 3 面
3. 平昌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 3 面
4. 平昌郡保健診療所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 3 面
5. 平昌郡建築條例案 ————— 4 面
6. '92술및흡과리防除事業眞相把握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朴容泰議員外3人發議) — 6 面
7. '92술및흡과리防除事業眞相把握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 7 面

(11時36分 開議)

○ ~~議長 韓榮一~~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
3回 平昌郡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
議 하겠습니까.

○ ~~議長 韓榮一~~ 議員 여러분!
오늘로서 第13回 臨時會 2日間の 짧은 會
期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郡에서 提出한 條例案과 火田代土

地 拂下를 要求하는 請願을 審議 議決하는 것으로 計劃되어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의 充實한 審議를 當부 드리며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1. 火田代土地拂下要求에 關한 請願 審查 報告 書 議決의 件

(11時37分)

○ 議長 韓榮 議事日程 第1項 火田代 土地拂下要求에 關한 請願 審查 報告 書 議決 의 件을 上程 합니다.

○ 議長 韓榮 請願 審查 特別委員會 委員 長이신 朱泰元 議員 審查 結果를 報告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朱泰元 議員 朱泰元 議員 입니다. 火田代土地 拂下要求에 關한 請願에 對하 여 請願 審查 特別委員會에서 審查한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請願 審查 報告 書는 지난 第12回 定期會 第8次 本會議에서 委員7人으로 請願 審查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92年度 12月24日 第1次 會議를 開議한 以後 平昌郡議會 請願 審查 規則에 依據 現地 調查 活動과 利害 關係人의 意見 聽取를 通하여 本 特 委에서 眞摯하고 深度 있게 審查한 結果 입니다.

報告는 配付하여드린 油印物의 審查 報告 書 中 第1項에서 第7項과 9項 10項은 省略하

고 8項의 審查 結果만 報告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審查 結果를 말씀 드리면,

第3次 請願 審查 特別委員會에서 全委員이 本請願의 趣旨를 充分히 理解하고 平昌郡 으로 移送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適法한 節 次를 거쳐 請願人에게 拂下되도록 함이 妥 當하다는 意見이 一致하여 本會議에 附議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報告 드리며, 議員 여러분의 滿場一致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실것을 當부 드리며 以上으로 火田代土 地 拂下要求에 關한 請願 審查 報告를 마치 겠습니다. 感謝 합니다.

○ 議長 韓榮 朱泰元 委員 長과 請願 審查 特委의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本 議題는 請願 審查 特別委員會에서 事前 에 充分한 期間을 두고 審查한 結果 報告 書 이므로 質疑와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하도 록 하겠습니다.

火田代土地 拂下要求에 關한 請願 審查 報告 書에 對하여 請願 審查 特別委員會에서 報 告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議長 韓榮 異議 없으시면 火田代土 地 拂下 要求에 關한 請願 審查 報告 書 議 決의 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 다.

- 2. 平昌郡議會事務課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平昌郡 守提出)
- 3. 平昌郡事務의 邑面委任 條例中 改正 條例案 (平昌郡守提出)
- 4. 平昌郡保健診療所 設置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平昌郡守提出)

(11時40分)

○ **議長 韓榮一** 議事日程 第2項 平昌郡 議會事務課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平昌郡事務의 邑面委任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平昌郡保健診療所 設置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以上3件을 一括하여 上程 합니다.

○ **內務課長 李** 內務課長 나오셔서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榮柱** 內務課長 입니다. 平昌郡議會事務課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과 平昌郡 事務의 邑面委任 條例中 改正 條例案, 平昌郡 保健診療所 設置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對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平昌郡議會事務課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本 條例 第3條에 事務職員의 定數를 運轉 技能職 1名의 定員이 增員되었으므로 定員

10名에서 11名으로 定員數를 改正하는 것이 며, 平昌郡 事務의 邑面 委任 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平昌郡 事務의 邑面 委任 條例의 委任 事務에 對하여 室課所 職制順으로 再 整備 하였고, 建築法, 山林法, 自動車管理法 等 條例의 上位法에서 邑面に 委任處理 하 도록한 自動車 住所變更 申請 接受, 2種 小 形自動車 使用申告, 바닥面積의 合計 50㎡ 內의 建築物 增築, 改築 또는 修繕 申告, 農業用 小規模 住宅 畜舍 또는 倉庫로서 建築法 施行令에서 定한 地域 및 規模 建築物의 建築 또는 對修繕申告, 廣告物等 設置 및 標示 撒布等은 削除하였고 關聯法에서 邑面に 委任하여 處理하고 있으나 漏落된 土地等級 決定에 따른 閱覽 및 個別通知, 山林內 炊事申告 不履行 및 山地淨化 區域內 汚物 또는 쓰레기 投棄行爲 過怠料 賦課 農村 燃料 採取地域으로 指定된 山林 林木의 伐採申告 및 申告畢證 交付, 上水道 使用料의 減免, 上水道 施設 維持管理, 매화장 申告 개장申告를 新設하였으며, 세번째 平昌 郡 保健診療所 設置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保健診療所 診療員을 正規職化 함 으로서 邑面に 配置하고 있는 保健 診療員은 保健社會部長官이 實施하는 4週 以內의 教育을 받은者中에서 郡守가 "委囑한다"를 "任用한다"로 本條例 第4條2項을 地方公務 員 任用令에 符合되도록 改正하는 것 입니다

本 改正條例案을 上程하였습니 다만, 改正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 議長 韓榮一 內務課長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提案說明을 들은바 있는 3件의 議題에 對하여 質疑나 討論하실 議員 계시면 發言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 議長 韓榮一 안 계시면 質疑와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表決하겠습니다.

먼저 平昌郡議會事務課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코자 議員 여러분의 意見을 묻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議長 韓榮一 異議 없으시면 平昌郡議會事務課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議長 韓榮一 다음은 平昌郡 事務의 邑面 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코자 議員 여러분의 意見을 묻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議長 韓榮一 異議 없으시면 平昌郡 事務의 邑面 委任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議長 韓榮一 다음은 平昌郡 保健診療所 設置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코자 議員 여러분의 意見을 묻습니다.

異議 있으신 議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議長 韓榮一 平昌郡 保健診療所 設置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議長 韓榮一 잠시 5分間 停會한後 會議을 續開 하겠습니다.

(11時48分 停會)

(11時53分 續開)

○ 副議長 朱泰元 자리를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繼續해서 條例案을 審議 하도록 하겠습니다.

5. 平昌郡 建築條例案

(11時53分)

○ 副議長 朱泰元 議事日程 第5項 平昌郡 建築條例案을 上程합니다.

○ 副議長 朱泰元 都市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李鎔世~~ 都市課長 李鎔世 입니다.

平昌郡 建築條例 制定案에 對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본격적인 實施等 變化된 建築 環境에 副應하고자 建築法令을 全面 改正하여 92年6月1日부터 施行하게 됨에 따라 當初 江原道 條例를 廢止하고 地方自治團體의 建築條例를 制定하여 地域特性에 符合되는 建築行政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目的이 있습니다.

建築法에 規定하고 있는 許容值를 最大限 活用하여 實施,利用 住民으로부터 不便事項이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改正前 建築法 江原道 條例等을 最大限 適用,既 建築된 建物,建築主와 平衡의 原則에 違背됨이 없이 適正을 기하였습니다.

本 條例 制定에 對하여 江原道에 事前 審議 檢討한바 있고,隣近 郡인 旌善,寧越, 橫城地域과 큰 變化가 없이 制定 되었습니다.

本 建築條例가 制定 公布되기 以前에는 從前 江原道 建築條例및 建築法令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本 條例가 早速 制定 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平昌郡 建築條例制定案은 모두 10章 60條로 制定되었으며,內容은 別添된 條例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平昌郡 建築條例 制定案에 對한 提案 說明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制定案을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副議長 朱泰元~~ 지금 提案說明을 들은 바 있는 議題에 對하여 質疑事項 있으시면 發言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 ~~副議長 朱泰元~~ 質疑 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副議長 朱泰元~~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 ~~副議長 朱泰元~~ 다음은 討論에 參加하실 議員 계시면 發言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 ~~副議長 朱泰元~~ 討論하실 議員 안계시면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 ~~副議長 朱泰元~~ 表決하겠습니다.

平昌郡 建築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코자 議員 여러분의 意見을 묻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副議長 朱泰元~~ 異議 없으시면 平昌郡 建築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92솔잎혹파리防除事業真相把握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1時57分)

○ **副議長 朱泰元** 議事日程 第6項 '92솔잎혹파리防除事業真相把握 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을 上程 합니다.

○ **副議長 朱泰元** 本案件은 朴容泰 議員外 세분의 議員께서 發議하신 議題 입니다 朴容泰 議員께서는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容泰 議員** 朴容泰 議員 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92年度 솔잎혹파리 防除事業을 實施하고 防除人夫賃 683만3,800원을 受領하지 못하고 있는 大和面 大和3里 박희열이 提出한 陳情書를 檢討하고 本議員外 3人的 議員이 發議한 '92솔잎혹파리 防除事業 真相把握 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에 對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注文을 말씀드리면, '92솔잎혹파리 防除事業 真相 把握 特別委員會 構成은 地方自治法 第50條 規定에 根據하여 박희열이 陳情한 事案을 圓滿히 解決하기 爲하여 '92솔잎혹파리 防除事業 真相 把握 特別委員會를 構成코자 함이며, 提案 理由는 '92年度 平昌郡이 솔잎혹파리 防除事業을 實施하면서 平昌郡 山林組合과 契約 推進하는 過程에서 工事 變更事由가

發生, 設計를 變更契約, 事業費 減少로 契約金額 全額을 支給받지 못한 陳情人의 苦衷을 충분히 理解하고 施行廳인 平昌郡의 '92솔잎혹파리 防除事業 推進 過程및 事業費 執行事項을 把握하여 本 陳情事項을 早期 解決하도록하고 向後 각종 事業推進에 있어 本 陳情과 類似한 事例가 發生치 않도록 施行廳의 監督 強化와 不合理한 業務推進으로 因한 郡民의 被害를 最小化 시키고자 함에 理由가 있습니다.

其他 詳細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外 3人的 議員이 發議한 '92솔잎혹파리 防除事業 真相 把握 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을 議員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실것을 當부 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 합니다.

○ **副議長 朱泰元** 朴容泰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朴容泰 議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은 '92 솔잎혹파리 防除 事業 真相 把握 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에 對하여 質疑나 討論하실 議員 계시면 發言申請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 **副議長 朱泰元** 發言 申請이 없으시면 質疑와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하겠습니다. 朴容泰 議員外 3人的 議員이 發議한 '92

솔잎혹파리 防除事業 眞相 把握 特別委員
會 構成決議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可決코
자 議員 여러분 의 意見을 묻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副議長 朱泰元** 異議 없으시면 朴容
泰 議員外 3人 의 議員이 發議한 '92솔잎혹
파리防除事業 眞相把握特別委員會 構成決
議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92솔잎혹파리防除事業眞相把握特別委
員會委員選任의件

(12時)

○ **副議長 朱泰元** 議事日程 第7項 '92솔
잎혹파리防除事業 眞相把握 特別委員會 委
員選任의件을 上程합니다.

○ **副議長 朱泰元** 委員의 構成은 地方自
治法 第50條3項의 規定에 依하여 議會에서
選任토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의 選任은 事前 同僚議員間 協議된 事
項을 司會者가 呼名하고 議員 여러분 의 同
議를 求하도록 하겠습니다.

'92솔잎혹파리防除事業 眞相把握 特別委員
會 委員으로 李致玉 議員, 李相薰 議員,
朴容泰 議員, 朱泰元 議員, 金樂雲 議員,
郭文春 議員, 金鍾永 議員 以上 7人을 選任
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副議長 朱泰元** 異議 없으시면 지금
呼名한바 있는 여섯 議員께서 '92솔잎혹파
리防除事業 眞相把握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副議長 朱泰元** 이것으로서 이번 臨時
會의 豫定된 議事日程이 모두 마무리 되었
습니다.

짧은 時間이나마 會議進行에 積極 協力하
여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께 感謝 드립니다
第13回 平昌郡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
散會와 第13回 平昌郡議會 臨時會 閉會를
宣布합니다.

(12時02分 閉會)

火田代土地拂下要求에關한 請願審查報告書
、 1993. 2. 4.
請願審查特別委員會

1. 審查報告

가. 請願人 姓名 : 박만수外 15人

住所 : 平昌郡 道岩面 橫溪里
85番地(5/5)

나. 紹介議員 : 金鍾永 議員

다. 接受日字 : 1992年 12月 9日

라. 配付日字 : 1992年 12月 19日

마. 上程日字 : 第12回 平昌郡議會(定期
會)第8次本會議(1992.12.

24)

- 特委構成, 委員選任

第1次 請願審查特別委員會(1992.12.24)

- 委員長, 幹事選任

第2次 請願審查特別委員會(1993. 2. 3)

- 趣旨說明, 檢討報告, 平昌郡側
意見聽取

第3次 請願審查特別委員會(1993. 2. 4.)

- 審查報告書 議決

2. 請願의 要旨

平昌郡 道岩面 橫溪里 85番地 박만수
外 15人이 1964年頃 政府로 부터 火田代
土地에 對하여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依
據 拂下를 要求하는 多數人 集團 請願임

3. 趣旨說明 要旨(金鍾永 議員)

○ 政府施策에 依하여,

- 火田民 定着事業으로 開墾한 國, 公有地에 集團 入住된 住民이 耕作하는 土地를 拂下要求하는 請願으로
- 그간 平昌郡이 適用 拂下한 火田整理에 關한 法律과 農地擴大開發 促進法에 依據 低廉한 價格으로 代土地를 拂下하여 즐것을 要求한데 반해 郡은 地方財政法을 適用 拂下코자 하여,

- 官, 民間의 意見相衝에 따른 住民이
欲求貫徹을 請願

○ 議會에서는

- 請願特委를 構成, 請願의 內容을 綿密히 檢討 處理하므로
- 住民의 財産과 權益保護를 圖謀하고자 함.

4.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 本 請願은,

- 平昌郡이 火田代土地를 火田整理에 關한 法律및 農地擴大開發促進法을 適用 拂下하면서,
- 請願人들의 代土地를 地方財政法을 適用 拂下코자 함에 따라,
- 同一 事案이 關係部署에 數次 建議 請願된 事案으로 이미 數회에 걸쳐 平昌郡이 方案을 提示한바 있음.

○ 請願人들은

- 現在 地方財政法을 適用, '91年 國有地 拂下價格에 比해 越等한 高價買入에따르는 財政負擔을 要求하는 郡의 不平等을 前提로,
- 그간 拂下 土地價格과 對等한 價格으로 火田代土地를 拂下 要求하고 있음.

○ 위 事項을 綜合하면,

- 平昌郡이 國, 公有 火田代土地를 拂下함에 있어

- 適用法規의 多元化 및 不合理한 法適用等 事業推進의 一貫性 缺如가 集團請願의 主原因이 되었으며,
- 本請願은 集團民願 事案으로
- 地域動向等を 勘案하여 請願人의 數回에 걸친 郡 關係部署 訪問과 建議 請願等を 收斂, 早期 解決하였어야 할 事項이나,
- 郡은 近間에 와서 81年度의 郡有地 賣却은 施行 錯誤의 不合理性을 指摘하고 請願人의 不確實한 買入不應을 前提로 積極的인 理解, 說得을 實行하지 아니하고 觀望하고 있는 狀態임
- 政府施策上 同一한 條件下에서 國有地를 開墾한 住民은 拂下를 받고, 道, 郡有地를 開墾한 住民은 私有未墾地 規定에 묶여 拂下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 本 事項은 平昌郡 管內에만 該當된 事案이 아니므로 施行廳에서 特別對策을 講究하여 請願人等에게 法의 平等한 保護가 되도록 特단의 努力이 要請됨.
- 對住民 關係上 本請願이 圓滿히 解決되도록 平昌郡으로 하여금 適法한 拂下가 早速히 實行되도록 함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됨.

5. 質疑, 答辯 要旨

【 質 疑 】

- 入住當時 火田代土地를 無償賃貸해준 以後 現在까지 無關心하게 放置한 理由?

[答 辯]

- 實際 耕作하면서 數次 賃貸契約토록 縱憑한바 있으나 入住者 不應으로 現在에 이룸

【 質 疑 】

- 既 拂下치 않아 現在 公示地價가 坪當 10萬에 이르러 入住者에 被害를 준데 對하여 向後處理 計劃은?

[答 辯]

- 標準地價格에서 公示地價가 現地보다 높은것은 事實이며, 向後 土地評價委員會 審議時 反映計劃으로 當委員會에 修正 要求中에 있음.
- 賃貸者가 現在 賃貸契約時 5年間 辯償 金을 郡에 拂入하면 賣却이 可能
- 拂下時 貸金納付는 分割 納入토록 配慮하겠음.

【 質 疑 】

- 請願人들이 數次 拂下要求한것이 事實이며, 公示地價를 再調整하는等 公約數를 찾아 解決할수 있었다고 보며, 그동안

郡이 無誠意하여 處理가 遲延된것이 아닌가?

[答 辯]

- 同地域에서 繁榮會, 同 請願人 등이 7餘年間 同一 請願이 繼續 있었음.
- 請願人은 未墾地로 拂下 要求하나 現行法上 地方財政法을 適用하는 郡의 立場이 엇갈려 合議 決裂로 遲延되었음.

[質 疑]

- 火田代土地는 當時 舊關係法에 依據 施行된바 當時法을 適用함이 妥當하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放置는 施行部署의 責任이며 請願人의 無知로 因해 發生된바 早速히 解決토록 措置

[答 辯]

- 上級機關의 質疑照覆에 依하면 地方財政法 外에는 適用이 不可하며, 入住者가 節次를 事前 履行時 拂下が 可能함.

6. 討論要旨 : 없음

7. 小委員會 審查報告要旨 : 없음

8. 審查結果

- 議 決 : 本會議 附議하기로 議決
- 議決內容 : 平昌郡에 移送하여 適法 節次를 거쳐 早期拂下 되도록 措置 要求

9. 其他 必要한 事項

○ 公有財産 賣却과 關聯 郡의 行政節次 履行

- 請願人과 對話를 통한 理解, 說得으로 合理的인 拂下實行
- 拂下條件 成立을 爲한 請願人의 行政節次 事前 履行 措置 必要
- 賣却을 爲한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10. 意見書

平昌郡 道岩面 橫溪里 박만수外 15人이 提出한 火田代土地 拂下要求에 關한 請願은 1964年頃 火田民 定着事業으로 政府에서 舊開墾 促進法(現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依據 國, 公有地를 開墾 集團 入住시킨 後, 平昌郡에서 入住者 耕作 火田代土地를 1981年 郡有地 一部에 對하여 火田整理에 關한 法律을 適用하여 賣却한바있고, 1991年 國有地 全面積에 對하여 江陵營林署 平昌管理所의 協助下에 農地擴大開發 促進法을 適用하여 拂下(低廉한 價格)함에 따라, 拂下를 받지못한 同地域의 住民이 拂下를 要求하는 請願으로서, 請願人들은 耕作農地에 對하여 平昌郡이 近間 地方財政法을 適用하여 拂下(高價賣却)코자함에 따라 平昌郡이 그간 拂下한 事例가 있음에도 不合理한 法適用等 行政의 一貫性이 缺如된 業務推進에 따른 善意의 被害를 主張하며,

從前的 拂下時 適用한 關係法을 適用, 拂下 하여 즐것을 要求하고 있으며, 이는 同一 條件의 土地에 對하여 拂下한 事例가 있고 請願人들에게도 既拂下 할수 있었으나, 拂下 對象에서 除外되어 온 點을 考慮時, 對 請願人과의 利害關係上 當該 機關의 充分한 檢討와 適切한 措置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아울러 이러한 農民의 情況을 考慮하여, 今後 連續된 請願, 陳情等의 集團 民願이 잇따를것이 豫想되므로, 早速한 時日內에 本請願이 圓滿히 解決될수 있도록하기 爲하여 平昌郡議會 請願審查 規則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依據 平昌郡에 移送 處理 托辱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1993. 2. .

○ 出席議員

- 議 長 韓 榮 一
- 副議長 朱 泰 元
- 議 員 李 致 玉
- 議 員 李 相 薰
- 議 員 朴 容 泰
- 議 員 郭 文 春
-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 內 務 課 長 金 榮 柱
- 財 務 課 長 姜 慶 錫
- 都 市 課 長 李 鎔 世


[議 席]


○ 議席表(4 面에 실음)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捺印함.

1993 年 2 月 5 日

議 長 韓 榮 一 

議 員 朴 容 泰 

議 員 郭 文 春 

事務課長 金 昌 吉 